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사의 사업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추가 〉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190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관 현 준

목 차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2200190)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사업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특별법에 따른 군공항 이전사업 및 중전부지 개발사업 추가(안 제9조)	2
가. 개정안의 내용	2
나. 검토의견	2
다. 국토교통부 의견	7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220019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대식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6. 7.
3. 회 부 일 : 2024. 6.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는 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각종 사업 등이 포함되나 ‘군 공항의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의 개발사업’은 포함되지 않음.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특별법에 근거하여 군 공항과 국제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최초의 사업으로 한국공항공사가 보유한 공항 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0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사업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특별법에 따른 군공항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추가(안 제9조)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업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9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9. (생략) <u><신설></u> ② ~ ④ (생략)	제9조(사업) ① ----- -----. 1. ~ 9. (현행과 같음) 10.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사업 ② ~ ④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대구 동구에 위치한 K-2 군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을 대구광역시 군위군 및 경상북도 의성군 일원으로 함께 이전하려는 사업으로, ①군공항 이전사업과 ②민간공항 건설사업 등으로

구성¹⁾되어 있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²⁾는 군공항 이전사업은 현 군 공항 및 대구국제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종전부지)의 지방자치단체장인 대구광역시장³⁾이 시행하도록 하되, 사업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종전부지를 활용하여 관광·상업시설을 설치하고 산업단지 등을 개발하는 종전부지 개발사업³⁾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14조⁴⁾는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

1)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란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이하 “군 공항 이전사업”이라 한다) 및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

나. 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등 기반시설의 건설, 공항이용객 및 항공관련업무 종사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항공화물유통시설·정보통신시설 등 공항의 업무와 관련된 시설의 조성

다.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와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 등을 위한 주거시설과 이에 수반한 생활 편의시설 등의 조성

2) 제8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고,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군 공항 이전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종전부지 개발사업”이란 종전부지를 활용하여 관광·상업 시설을 설치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제14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다만, 국가는 제5조제4항의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를 ①국가·지방자치단체, ②공공기관, ③지방공사 또는 ④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즉 소위 특수목적법인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대구광역시는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공항공사 등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⁵⁾을 체결한바, 협약에 따라 추후 한국공항공사는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고, 그 특수목적법인이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대행자로 지정되어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한국공항공사의 사업범위에 민간공항 건설 등이 아닌 군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은 포함되지 않아 한국공항공사가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임⁶⁾.

이에 개정안은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4.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

5) 참고. 대구시-공공기관 간 업무협약

6) 참고로, 지난 2013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한국석유공사에 대하여 한국석유공사가 정유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p.73)

추가하여 동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려는 취지로 보임.

한국공항공사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15개 민간공항 중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14개 민간공항⁷⁾의 운영,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면서 지속적으로 공항시설의 증설·개량 등 공항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8개 신공항⁸⁾ 중 가덕도신공항을 제외한 7개 공항의 건설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공항개발의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군 공항 이전사업에 있어 그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또한, 군 공항 이전사업뿐만 아니라 종전부지 개발사업도 추후 한국공항공사가 출자하여 구성될 특수목적법인에서 수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공사의 사업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도 사업 추진의 효율성 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임.

다만, 동법의 목적⁹⁾ 및 법체계와 향후 한국공항공사의 특수목적법인 참여 방식 등을 고려하여 한국공항공사의 사업참여 근거를 동법이 아닌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7) 김포공항, 원주공항, 양양공항, 청주공항, 군산공항, 사천공항, 제주공항, 김해공항, 여수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포항공항, 울산공항

8) 울릉도 소형공항, 흑산도 소형공항, 제주 제2공항, 새만금 신공항, 서산공항, 백령도 소형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가덕도신공항

9) 「한국공항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¹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과 같이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사업범위에 추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7.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1.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업무)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5.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참고로, 현재 다른 법령¹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10)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유사입법례가 있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사업)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사업) ③ 공사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특수목적법인이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은 현재 계획에 따른 것일 뿐이고, 중전부지 중 한국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현 대구국제공항의 부지에 대해서는 추후 한국공항공사가 직접 주체로서 중전부지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으므로, 출자 근거가 아닌 사업 근거가 필요하며,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는 개정 이후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임.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사업) ③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그 관련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1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3(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제4조제6항에 따라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에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혁신지구재생사업,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 등이 있음.

다. 국토교통부 의견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민·군 통합공항으로서 활주로 등은 민·군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는바, 체계적인 공항 건설(군공항 이전) 및 주변지역 개발 등을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전문성이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 지원을 위해 대구시 주관으로 “대구시, KAC, LH, 대구·경북공사 등 간의 협약('24.3.20.)”을 체결하였으므로 한국공항공사법 개정 이후 한국공항공사 등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에 동

만 해당한다)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6(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법 제8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9.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혁신지구사업시행자) 법 제4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8.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11(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도시개발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11(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68조의11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6.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80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업 무 협 약 서

제1조(의의 및 목적)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은 대구 군공항을 이전하여 신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구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대구교통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는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협력 내용) 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약당사자는 다음의 업무를 상호 협력한다.

1. 사업타당성이 확보된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능력 있는 민간참여자의 참여, 신속하고 원만한 사업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2. 대구시는 공공기관의 본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제시하는 사업 참여 선결조건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3. 대구시는 본 사업의 사업타당성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관련 법령, 협약서의 제정·개정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4. 기타 협력 방안은 추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3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거 결정한다.

제4조(기본업무협약 체결)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당사자는 각 기관별 내부절차를 고려하여 기본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5조(협약의 해제·해지) 1. 협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해당 사유를 일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일방 당사자가 협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나. 기관 사정상 협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다. 기타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2. 제1항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제반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비밀유지)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사실이나 자료를 상호 간 사전협의 없이 타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이는 협약 기간의 만료 후에도 유효하다. 만약, 이를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법적구속력 배제) 제6조를 제외한 본 협약서의 내용은 협약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제8조(신의성실) 본 협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고, 서명 일로부터 본 사업의 종료 시까지 효력이 지속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6부 작성하여 협약당사자가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3월 20일

 **대구광역시**
시장 홍준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한준

 **KAC** 한국공항공사
사장 윤형중
대리하여 부사장

이미애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정명섭

대구교통공사
 **DTRO**
사장 김기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이재혁